

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

의안 번호	102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: 2019년 9 월 3 일

제 안 자: 기획경제위원장

1. 주 문

농수산물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공영도매 시장인 가락시장을 비롯해 강서시장, 양곡시장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설립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취득세,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2019년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기한과 부칙 제9조의 최저한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함.

2. 제안이유

-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출하농어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임.
- 또한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장 사용료, 시설사용료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

보호하고 유통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.

- 이러한 공익적 목적으로 인해 공영도매시장을 관리·운영하는 지방공사가 그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, 그리고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19년말로 종료될 예정임.
- 지방세 감면 중단 조치는 지방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는 물론이려니와 증가한 세금비용이 고스란히 농수산물 출하 농어민과 시장 내 유통상인에게 전가되어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와 생산자의 출하비용 증가, 시민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됨.
- 이에, 서울특별시의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함.

3. 이송처

- 국회의장, 행정안전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

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

- 농수산물의 유통은 생산자인 농어민과 최종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주체와 경로가 상호 연계되어 농수산물의 수집·운송·보관·거래가 이뤄지는 복잡한 과정으로, 서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.
- 그동안 정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가 농수산물 유통비용의 증가와 생산자의 출하비용 증가, 서민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지방공사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을 연장하면서 면제해왔으나, 2019년 말이면 종료된다.
-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서는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말까지 감면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- 입법예고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지방세 면제 조치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국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거래량과 거래 금액의 약 50% 이상을 처리하는 ‘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’의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해진다.

- 즉, 증가된 지방세 부담분이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와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초래하고 도매시장의 주 고객인 전통시장, 중소형 마트 등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지역상권의 붕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,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 물류 효율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중단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.
- 또한,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면세를 받고,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(가락, 강서, 구리)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.
- 더욱이 추가 감면율의 조례 위임은 공사가 위치한 관할구역의 정치적 환경과 주민의 개발수요에 따라 감면 여부가 불투명하며, 지역 간 새로운 갈등 유발 원인이 될 수 있다.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공영도매시장이 지속성장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자를 포함한 모든 유통주체가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가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.
 - 첫째,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최저한세 배제 일몰기한을 “2019년 12월 31일”에서 “2022년 12월 31일”까지로 연장한다.

- 둘째,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, 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.

2019. 9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

붙임 1

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현행 수준 유지 개정

□ 개정 검토(안)

○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5조 및 부칙 개정

현행	개정 검토(안)
<p>제15조(한국농수산물식품공사등의 농어업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</p> <p>②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(이하 이 조에서 “농수산물공사”라 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<u>2019년 12월 31일까지</u> 감면한다.</p> <p>부칙<법률 제14477호, 2016.12.27.></p> <p>제9조(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</p> <p>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.</p> <p>2. 제15조제2항, ----- : 2020년 1월 1일</p>	<p>제15조(한국농수산물식품공사등의 농어업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</p> <p>②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(이하 이 조에서 “농수산물공사”라 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<u>2022년 12월 31일까지</u> 감면한다.</p> <p>부칙<법률 제00000호, 2019.00.00></p> <p>제9조 (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</p> <p>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<u>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</u>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</p> <p>2. 제15조제2항, -----: 2023년 1월 1일</p>